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통보·권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관 련 자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 · ○○○○○○○○○)에서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 총 0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에 대한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와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 여부·구조 및 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지반과 수면과의 거리·토사매물 또는 시설의 고장 여부·소방차량의 진입 가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용수조사부에 조사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일자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소화전 호스접결구 높이 기준이 명시¹⁾됨에 따라, 기존 설치 소화전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직접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정기조사 과정에서 현장 사용상 장애가 예상되는 시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토사매물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고, 이에 따른 고장 발생 내역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조사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 유지하였어야 했고, 본서 소방용수 담당자는 보고된 소방용수시설 고장내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업무 소홀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고장발생보고 대상 소화전을 샘플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000호는 0000년 0월 00일 고장

1)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발생보고가 되었으나,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0월 제외) 소방용수관리시스템²⁾(이하 '시스템')에 양호로 기재하였고, ☆☆000호는 0000년 0월 00일 고장발생보고가 되었으나, 0000년 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상 양호로 기재하였고, ♡♡000호는 0000년 0월 0일 고장발생보고가 되었으나, 0000년 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상 양호로 기재하였고, ♡♡000호는 0000년 00월 00일 고장발생보고가 되었으나, 0000년 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상 양호로 기재하였고, ◆◆000호는 0000년 0월 00일 고장발생보고가 되었으나, 0000년 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시스템상 양호로 기재하는 등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0개소의 소화전은 호스접결구 높이가 낮아 현장 사용상 장애가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0개소는 보호틀 방향이 부적정하게 위치하고 있음에도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방용수관리시스템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소화전 호스접결구 높이가 낮아 현장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존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 설치 당시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향후 도로포장, 인근 재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로 호스접결구가 지면에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정기조사 시 이를 확인하여 관계기관 통보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2024년 7월 1일자 개정을 통해 소화전 호스접결구에 대한 높이가 규정되어 기존에 설치된 소화전까지 인상 작업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변경된 기준에 맞게 관계기관(시·군청, 상수도사업소) 통보 등의 노력을 통해 유지·관리하여 현장 활동 대원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에 따른 ○○ 담당자 후속 조치 부적정

2) 강원소방은 2022년부터 소방용수조사부를 대체하여 소방용수관리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도입 운용중

○○소방서(○○○○○○) 감사 대상 기간 중 고장 발생 보고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샘플링 조사로 확인한 결과, ●● △△△△ 담당자가 ◇◇ ◇◇ ㉠㉠㉠㉠ 담당자로부터 고장발생보고를 확인하였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기관에 수리 요청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 △△△△ 담당자로서의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하였다.

다. 소방용수시설 중복 관리에 따른 미관리 소화전 존치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고장 발생 보고 대상 소화전을 샘플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 ○○○○○에서 관리하고 있는 ●●0000호와 ◎◎000호가 동일 주소인 ☆☆면 ♥♥로 0000으로 등록되어 있어 동일 주소로 중복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소방용수관리시스템상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000호는 0000년 00월까지 담당자(소방○ ○○○)를 통해 ◆◆면 ●●로 0000-00(△△0리 ◇◇동 ㉠㉠) 주소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0000년 0월 담당자(소방○ ○○○)로 변경 후 사유 불명으로 현 ●●000호 주소(◎◎면 ☆☆로 0000)로 변경되면서 기존 위치의 ♥♥000호는 시스템상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누락되었고, 그 결과 0년 0개월간 미관리 상태로 존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000호는 소방용수관리시스템에 특이사항(◆◆◆ ●● △△△△ ◇◇)을 기재하지 못하여, ○○○○○○○○○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결과’ 로 내부결재에 고장내역(☆☆☆☆ ♥♥) 내용을 0000년 0월~ 0월까지 기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000호 ‘지상과 호스접결구 높이 부적정’ 에 관하여 ○○○○○○○○○○

-0000(0000.0.00.)「소화전 고장발생 보고(◆◆ 000호)」문서와 같이 고장발생 보고를 본서에 제출하였으며, 소방용수관리시스템에 특이사항을 남기지 못하여,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결과’문서로 부서 내부결재에 특이사항(●●● △△△ ◇◇◇ ㉠㉠ ㉡㉡)로 기재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방용수관리시스템에 고장 및 특이사항 등을 잘 기재하라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견에 대한 판단

현장부서 소방용수 담당자는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라 매 월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 조사 업무 시 고장사항 등 특이사항에 대하여 소방용수조사부에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000호 및 ☆☆000호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로 일부 고장사항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방용수관리시스템에 고장 및 특이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 현장 사용상 장애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및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소방용수시설 중복 관리에 따른 미관리 소화전 존치

○○○○○○○○○○(○○○○○○) ☆☆☆☆담당자 및 팀장, 부서장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각각 다른 0개의 소화전(♡♡000, ♡♡000호)을 동일 주소로 관리함에 따라 본래의 위치에 있는 나머지 0개의 소화전(◆◆000호)을 약 0년 0개월간 미관리 상태로 방치시키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매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와 연 2회의 정밀조사를 통한 소방용수조사부 기록 및 검토를 성실히 하였다면, 부서장 및 팀장,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관리 소화전으로 방치한 것은 부서 전체의 업무 태만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³⁾를 위반하였지만 해당 소화전(●●000호)이 과거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개편 시 일제 변경 작업을 통해 착오 등에 의해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 각각의 소화전(△△000, ◇◇000호)이 한 개의 팀이 아니라 별개의 팀에서 관리하다 보니 조사 업무 시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부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부서경고]**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방용수시설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에 「부서경고」 처분하니, 규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확인, 고장 발생 보고 후 관계기관 통보 및 조치 결과 관리, 장기 미조치 시설 추적 관리, 중복 등록 시설 일제 점검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시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은

- ① [권고]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소방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소홀히 한 내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용수시설 조사 결과의 시스템 입력 기준, 고장 발생 시 관계기관 통보 절차, 장기 미조치 시설 관리 방안, 소방용수 중복 등록 시설 정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지번 주소 형식에서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전면 시행⁴⁾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기 및 누락 사항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소방용수시설 전반적인 확인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4) 2014. 1. 1.